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계획 공고

관내 석면 건축물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재와 벽체 철거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춘 천 시 장

1. 사업안내

○ 사업명 :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주택 슬레이트 : 128동 / 450,560천원
- 비주택 슬레이트 : 70동 / 378,000천원
- 주택 지붕개량 : 4동 / 25,120천원

○ 지원대상

-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축사, 창고

○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
-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 지원범위

지원분야		우선지원가구	일반가구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철거·처리 (부지내 부속건물 포함)	동(棟)당 전액지원	동(棟)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비주택(축사·창고) 철거·처리	동(棟)당 슬레이트 철거 철거·처리비 지원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지붕개량	동(棟)당 최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동(棟)당 3백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초과 발생시 자부담 원칙

※ 우선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2.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4. 2. ~ 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대상자가 많은 경우 접수공문 선착순으로 대상자 선정
- 우선지원 대상은 2024. 3. 29.일까지 우선 접수 협조 당부

○ 신청방법 : 건축물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붙임1) 2024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 (붙임2) 2024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첨부서류 안내 1부.

3. 우선순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일반가구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동일 순위에서는 작은 면적을 우선 지원

○ 연계 가능한 타 사업* 수급자를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지원

*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주거급여 수선유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등

4. 유의사항

-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동(棟)당 지원
-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 * 주택, 창고, 축사, 공장, 기타로 구분

- 예시1) 축사로 설계된 건축물이나 축사로 사용하지 않고 잠실(누에 사육), 버섯재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축사로 분류
- 예시2) 창고로 설계된 건축물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경우 창고로 분류

- 주택의 부지 내에 부속건물(등재 또는 미등재)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棟)으로 지원
 - 만약 같은 주택 부지내 등재된 주택이 2채 있고 각각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 2동으로 각각 지원

- 예시1) 주택 부지내 주택 외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2개(창고 1개, 화장실 1개)가 있는 경우는 주택 1동으로 지원
- 예시2) 같은 주택 부지내에 등재된 주택 2개가 있으나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주택 1동(棟)으로 지원

※ 주택부지내 주택은 슬레이트가 아니나 부속건물만 슬레이트인 경우에는 “비주택 철거처리분야” 배정 예산내에서 집행하되, 주택 1동 최대지원액 내에서 지원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 예시1) 주택 부지내 주택 1개와 창고 2개가 있어 2018년에 주택 1개 철거·처리 지원 받고, 2020년에 나머지 창고 2개를 철거·처리 신청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예시2) 400㎡ 면적의 축사 1채를 2019년에 200㎡ 면적에 대해 철거·처리 지원받고, 2020년에 나머지 200㎡ 면적에 대해 철거·처리 신청한 경우는 지원 불가 (이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을 일부만 해체하는 것은 중복 지원여부 뿐만아니라 석면비산에 따른 건강 위해 우려)

- 주택 또는 창고·축사 철거 추가 대상자가 없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배정 예산의 5% 한도내(위탁수수료 포함)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관 및 원인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의 운반·처리비 지원 가능

5. 접수 문의

-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르며 기타사항은 춘천시청 자원순환과(☎033-250-3337)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